## 환자안전법 시행규칙



[시행 2024. 11. 7.] [보건복지부령 제1068호, 2024. 11. 7., 타법개정]

보건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) 044-202-2472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환자안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환자안전사고의 범위)**「환자안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(危害)"란 사망・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・신체・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말한다.
- **제3조(환자안전종합계획 내용)**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- 1.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재원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 - 2.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  - 3.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  - 4.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3조의2(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)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(이하 "중앙환자안전센터"라 한다)의 장은 매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·사업실적 및 예산·결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  - 1. 사업계획 및 예산: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
  - 2. 사업실적 및 결산: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

[본조신설 2020. 7. 30.]

- 제3조의3(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·운영 등)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·단체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협회·단체를 말한다.
  - 1. 병상 수가 5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(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  - 2. 「의료법」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
  - 3. 「의료법」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
  - 4. 「의료법」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
  - 5. 「약사법」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
  -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(이하 "지역환자안전센터"라 한다)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협회 또는 단체
  - ②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은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.
  - 1.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할 것
  - 2.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1명 이상의 상근(常勤) 인력을 갖출 것. 다만, 의료기관은 제5호의 기준을 갖춘 경우 별도의 상근 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.
  - 3. 「의료법」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것
  - 4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・운영할 것
  - 5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(이하 "전담인력"이라 한다)을 3명 이상 배치할 것
  - ③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
- 2.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- 3. 사업운영계획서
- 4. 재정운용계획서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
- 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, 사업추진현황,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⑥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·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20. 7. 30.]

- 제4조(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지표(이하 "환자안전지표 "라 한다)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1. 환자안전지표의 측정 가능성
  - 2. 환자안전지표의 현실 적합성
  - 3. 환자안전지표의 국가별・지역별 비교 가능성
  - 4. 환자안전지표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가능성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지표의 개발·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「보건의료기본법」제 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(이하 "보건의료기관"이라 한다)과「의료법」또는「약사법」에 따른 의료인 단체, 의료기관 단체,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(이하 "보건의료단체"라 한다)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단체 등에 보급한다.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- 제5조(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기관) 법 제11조제1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"이란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(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 다만,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7. 30.>
- **제6조(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 7. 30.>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,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  -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- 제6조의2(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) ①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고서(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1.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서류
  - 2. 위원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
  - ②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그 다음 연도부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의 구성·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
- 2.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계획
- 3. 전년도의 위원회 운영실적
- 4.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0. 7. 30.]

- 제7조(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  -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.
  -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④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**제8조(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)** 법 제11조제3항제6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0. 7. 30.>
  - 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기준(이하 "환자안전기준"이라 한다)의 준수에 관한 사항
  - 2. 환자안전지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- 3.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
  - 4. 환자안전활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제9조(전담인력)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"이란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. 다만,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20, 7, 30.>
  - ②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3년을 말한다.<개정 2020. 7. 30.>
  - ③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 - 1.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(종합병원은 제외한다): 1명 이상
  - 2.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: 1명 이상
  - 3.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: 2명 이상
  -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,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담인력 배치현황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신설 2020. 7. 30.>
  - ⑤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"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.<개정 2020. 7. 30.>
  - 1. 환자안전활동의 보고
  - 2.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
  - 3. 환자안전지표의 측정 점검
  - 4.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⑥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제10조(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)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(이하 "환자안전교육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환자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
- 2. 환자안전사고의 정보의 수집 분석에 관한 사항
- 3. 환자안전기준 및 환자안전지표에 관한 사항
- 4.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
- 5. 「보건의료기본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및 환자와의 소통ㆍ협조에 관한 사항
- 6. 환자 및 환자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사항
- 7. 환자안전에 관한 외국의 제도 및 사례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 환자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- 1. 교육 방법: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온라인 교육. 다만, 전담인력으로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대면교육으로 실시한다.
- 2. 교육 시간: 매년 12시간 이상. 다만, 전담인력으로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을 명하는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, 교육내용,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자안전교육의 절차, 방법, 시기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**제11조(환자안전교육 업무의 위탁)**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환자안전교육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, 소재지, 대표자 성명 및 위탁 업무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  -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환자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전문기관"이라 한다)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실시 계획, 교육운영 현황, 교육시설 현황 및 재정운용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개선·보완 등을 명할 수 있다.
- 제12조(환자안전사고의 보고)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"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1. 보건의료인
  - 2. 보건의료기관의 장
  - 3. 전담인력
  - 4. 환자
  - 5. 환자 보호자
  - ②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"이란 병상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. 다만,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다.<신설 2020. 7. 30.>
  - ③ 법 제14조제2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서 "심각한 신체적·정신적 손상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신설 2020. 7. 30.>
  - 1.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
  - 2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자폐성장애인은 제외한다)이 된 경우
  -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각한 신체적 · 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④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(전자문서로 된 서식을 포함한다)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·학습시스템(이하 "보고학습시스템"이라한다)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0. 7. 30.>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: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서
- 2.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람: 별지 제6호서식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서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.<신설 2020. 7. 30.>

[제목개정 2020. 7. 30.]

- **제13조(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)**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.
  - 1.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관한 자료
  - 2.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・중재에 관한 자료
  - 3.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각종 평가 인증 및 분석 자료
  - 4. 환자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수집 분석 자료
  -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- **제13조의2(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)**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.
  - 1.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관한 자료
  - 2.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・중재에 관한 자료
  - 3. 의약품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 안전성에 관한 자료
  - 4.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각종 평가 인증 및 분석 자료
  - 5. 환자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수집 분석 자료
  -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[본조신설 2020. 7. 30.]

- **제14조(주의경보 발령 사유)** 법 제16조제2항에서 "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환자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새로운 유형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
  - 2.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
  - 3.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학습시스템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
  - 4. 그 밖에 환자안전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보 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- 제15조(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위탁) 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운영 및 재정집행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6조(검증)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"이란 환자안전사고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1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자
  - 2.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관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17조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·운영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12. 31.]

부칙 <제1068호,2024. 11. 7.>(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 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